#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35

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윤후덕·염태영·임오경

김정호 · 홍기원 · 이병진

박 정・전진숙・정준호

김동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.9%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, 미등록대부업자 의 경우 「이자제한법」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음. 또한,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 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.

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%로 하며,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%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 를 제한하는 한편,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 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유인을 차단하고자 함(안 제8조, 제15조 및 제19조).

법률 제 호

##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100분의 27. 9"를 "100분의 20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에 따른 이자율"을 "「상법」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채무자가"를 "제1항을 위반한 대부계약에 대하여 채무자가"로, "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"을 "「상법」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100분의 27. 9"를 "100분의 20"으로 한다.

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2의2.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·제4항·제5항 및 제15 조제1항의 개정규정(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)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	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
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「중	①
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	
따른 소기업(小企業)에 해당하	
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	
그 이자율은 연 <u>100분의 27. 9</u>	<u>100분의 20</u>
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.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	<b>4</b>
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	
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	법」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
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	이율
로 한다.	
⑤ <u>채무자가</u> 대부업자에게 <u>제1</u>	⑤ 제1항을 위반한 대부계약에
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	<u>대해 채무자가</u>
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	- 「상법」 제54조에 따른 상사
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	<u>법정이율</u>
은 원본(元本)에 충당되고, 원	
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	
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	
다.	

#### ⑥ (생략)

제15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)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<u>1</u> 00분의 27. 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 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.

#### ② ~ ⑤ (생 략)

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1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· 2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- 3. ~ 5. (생략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 <삭 제>

⑥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
제한) ①1
- 00분의 20
<u>.</u>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
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
제19조(벌칙) ①
<u>.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
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
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
<u>받은 자</u>
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
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자

3. ~ 5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